

#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일

발 의 자 : 강성삼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시기를 조정하고,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감사 결과를 차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자 함.
-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하남시 예산 집행 및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(안 제4조제2호)

- 매년 11월 20일 → 12월 1일

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(안 제5조)

-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→ 제1차 정례회로 조정

### 3. 검토의견

#### 가. 입법 필요성

- 현행 회기 운영 체계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어, 감사 결과가 차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.
-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 결과를 예산 편성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안 심의 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#### 나. 입법 적정성

-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회기 구조를 재편한 것으로, 감사와 예산 심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됨.
-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 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실무적·운영상 타당성이 인정됨.
- 이를 통해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기능 수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법적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

영,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짐.

-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(법 제49조), 예산안 의결(법 제142조), 결산 승인(법 제150조)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실시 시기와 회기 운영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감사와 예산 심의 기능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체계에 위배되거나 권한을 일탈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### 라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고,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함.
-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